

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의2]
<신설 2026. 7. 1.>

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의
기준과 범위(제34조제3항 관련)

1.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표시·광고를 말한다.
 - 가. 제품승인(법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(이하 이 표에서 “비살생물제품”이라 한다)의 명칭, 효과·효능의 주장, 그 밖에 제품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에 ‘살균’, ‘살조’, ‘살충’, ‘살서’, ‘기피’, ‘보존’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·광고
 - 나.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(이하 이 표에서 “비살생물처리제품”이라 한다)의 명칭, 효과·효능의 주장, 그 밖에 제품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에 ‘항균처리’, ‘보존처리’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·광고
 - 다. 비살생물제품 또는 비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·효능의 주장, 그 밖에 제품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에 관련 분야 전문가가 그 제품의 살생물 기능을 지정·공인·추천·지도하거나 연구·개발·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을 포함하는 표시·광고
2. 제1호에 따른 표시·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해 하는 것으로 한다.
 - 가. 제품(해당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포함한다)의 겉면·포장 또는 첨부 문서
 - 나. 신문·방송 또는 잡지
 - 다. 전단·팸플릿 또는 견본
 - 라.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
 - 마. 포스터·간판 또는 전광판
 - 바.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
3. 그 밖에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·광고의 기준 및 범위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